

국유재산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계고 공고

구로동 589-26번지(철도용지, 국유지)에서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를 위반하여, 같은 법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자진 수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, 소유자 주소 미상 등 사유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8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

- 공 고 명 : 국유재산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계고 공고
- 공고기간 : 2026. 5. 18.(월) ~ 2026. 6. 19.(금) (32일간)
- 공고장소 : 구로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 게시판
- 법적근거 :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- 공고내용 :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 계고

점용자	위 치	대 상	면적	내용	정비 기한
강○순	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9-26, 구로역 3번 출구 옆	야채, 수레 등 *붙임 사진 참고	약 2.5㎡ 약 2.24㎡	자진 수거	2026.06.19. 까지

-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[행정대집행법](#)」 제2조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또는 「[국유재산법](#)」 제72조에 따라 [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음](#)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구로구 가로경관과(☎ 02-860-311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